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조직

제3장 재정

부칙

작성부서	창업교육센터	제정일자	2014. 3. 24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팀 장	차장	창업교육센터장	산학입학처장	교무학생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4. 03. 24.	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정
2	2017. 12. 18.	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 개정
3	2018. 02. 19.	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 학생처/취업지원처 → 학생취업처 -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
4	2019. 11. 26.	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창업교육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창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 내 창업교육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12.18.>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동원대학교 창업교육센터라(이하“센터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대학 내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4.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·연계에 관한 사항
5. 대학 내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 2 장 조직

제4조(구성) ① 센터는 창업교육센터장(이하 ‘센터장’이라 한다)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행정직원은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센터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.<개정 2019.11.26.>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9.11.26.>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행정직원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 한다.

1. 연도별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

2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
4. 기타 창업교육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 3 장 재정

제7조(수입) ① 이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이 대학교 지원금
2.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
3. 기타 수입금

제8조(지출) 이 센터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동아리 지원, 창업교육지원,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등 창업교육을 위한 제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.

제9조(지침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